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6-10호
발행일: 2026. 9. 14. (월)
제438회 국회(임시회, 2026. 8. 2. ~ 2026. 8. 31.)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주주가치 제고 II
나. 화장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
다.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도입
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38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8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8월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70건, 8월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34건으로 모두 104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38회 국회 제1차 ~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주권 상장법인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 엄격한 안전관리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사업에 정부 승인을 받은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4)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는「우주개발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5)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 단위 상 · 하한 범위 형태로 반영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6) 기후위기와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마련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제정법률안, (7)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공공재산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제정법률안, (8)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고정가격 방식의 계약시장제도로 일원화하는 등 내용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9)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 발전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8회 국회의 2026년 8월 20일 및 8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04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국회운영위원회(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의원 등 10인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의원 등 10인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4	법제사법위원회(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등 10인
5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6	법제사법위원회(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7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주민 의원 등 115인
8	정무위원회(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1	재정경제기획 위원회(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 위원장
22	교육위원회(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3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9)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2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2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2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2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3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의원 등 18인
3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의원 등 13인
32	행정안전위원회(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33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의원 등 15인
3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4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4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42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43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어기구 의원 등 12인
4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의원 등 10인
4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등 11인
4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등 10인
4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의원 등 11인
4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4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 등 10인
50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의원 등 10인
51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의원 등 11인
5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의원 등 10인
5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의원 등 10인
54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 의원 등 14인
5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0)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5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5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5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59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의원 등 11인
60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등 10인
6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의원 등 10인
6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의원 등 10인
6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의원 등 10인
6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의원 등 10인
65	보건복지위원회(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등 13인
66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6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68	보건복지위원회(1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6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 등 10인
7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등 11인
7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의원 등 11인
7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의원 등 11인
7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
7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의원 등 10인
7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등 10인
79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4인
80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8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8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83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8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8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8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의원 등 10인
87	국토교통위원회(16)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8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89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90	국토교통위원회(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의원 등 12인
9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의원 등 13인
9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의원 등 11인
9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7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00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연희 의원 등 11인
101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박상혁 의원 등 10인
10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의원 등 11인
10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10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주주가치 제고 Ⅱ, 화장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도입,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주주가치 제고 Ⅱ

개요

회사의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들은 기업가치의 평가액인 합병가액을 기초로 한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므로, 합병가액의 산정방식은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 합병가액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이 시장가격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배주주 등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형성하고자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이 저평가된 시기를 선택하여 합병을 추진하거나 주가 누르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현정부는 시가 기준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공정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합병 등 조직개편행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도개선을 도모해 왔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이와 같은 행보에 발맞추어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공정가액으로 하는 등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의 법 개정에 대해 일반투자자와 학계에서는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일컬어져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대한상의 등 재계에서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불명확성 문제와 함께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입법정책브리핑 제2025-8호 주주가치 제고, 제2025-11호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 제2025-6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II 등 이슈 참고).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자산가치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는 등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법인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특정 시점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주식가격만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경우 지배주주가 지배구조 강화에 유리한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합병가액을 유도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 및 제165조의5 등).	2026-08-20 (원안가결)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금융위)

□ **과제목표**

○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 **주요내용**

○ (**주주가치 제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상법」**의 시장 안착 및 추가입법 단계적 추진(법무부)

- **주주이익 환원**을 위한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 **합병·분할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합병분할시 공정가액 적용,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배정 및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 및 이행여부 점검·공시 등 내실화 추진

*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주권한을 행사토록 유도하는 지침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를 엄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불법이익은 철저히 박탈

- 불공정거래 **탐지·적발 역량 제고**를 위해 **AI기술 도입·활용** 및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담당 조직·인력 확충

○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MSCI 및 글로벌 투자자 등과 대외소통 강화

-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 등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
-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하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등으로 건전한 IPO 환경 조성

* (예) 코넥스(벤처·중소 위주) - 코스닥(성장·중견 위주) - 코스피(우량·대기업 위주)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

2026 정부 업무보고(금융위원회, 2025. 12. 19.)

□ **공정한 주주보호 원칙**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 문화 확산**[국정47]

❶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지원 및 공시 강화, **합병가액** 등의 공정성 제고,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신주배정 등 **주주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❷ 투명한 **투자자 정보제공**을 위한 **주주총회 표결결과** 및 **임원 보수** 공시 강화('26上)

❸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한 적용대상·범위 확대 및 이행점검 제도 안착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 확산*

* (적용) 상장주식 → 주식·채권·대체투자, G(지배구조)고려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
(이행점검) 자산운용사부터 시작 → 연기금·PEF 등으로 확대

출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업무보고 누리집

참고 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 신장식 · 한창민 의원안: 합병가액 산정방식 변경 등 제도개선 2025. 2.
윤한홍 의원안: 합병 등 관련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방안 마련 2025. 2.
김현정 의원안: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 강화 등 2024. 9.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국회의원 정책자료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가 누르기 유인도전면 차단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 8. 2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방식 규제 현황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5. 7. 27.
이 글에서는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에 대한 현행 규제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공동심포지엄 2026. 6. 17.
우리 자본시장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으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 규정의 정비가 이어지면서,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진전은 투자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향한 견고한 토대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후속 과제가 그것입니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3-15 2023. 8. 17.
우리나라는 공정한 합병가액의 산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상장법인 간 합병 그리고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 시 합병가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시장주가에 의해 획일적으로 산정되는 합병가액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일본의 최근 5년간 상장법인의 합병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업별로 다양하게 합병가액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의 경우 시장주가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상장법인 간 합병사례를 살펴본 결과, 합병 발표 1년 전부터 누적 시장조정수익률이 평균 -16.0%로 나타나, 합병가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시점이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선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합병비율이 법에서 정한 산식대로 결정된 경우,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도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제는 계열사간 합병과 비계열사간 합병 모두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자율화하되, 합병당사회사의 경영진이 공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규제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합병하는 회사의 이사회에서 합병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하고, 그 산정방식과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주주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합병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합병의 경우 합병유지청구권, 합병검사인제도, 합병관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화장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

개요

국내 화장품산업은 K-뷰티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성장했지만(국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를 넘어 세계 3위 수준에 이르렀고, 국내 중소기업 수출품목 중에서도 1위를 차지), 그동안 법제의 중심은 「화장품법」을 통한 제품의 안전성 확보, 제조 · 유통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있었습니다. 산업진흥 측면에서는 「화장품법」 제33조에 포괄적인 지원 근거가 있었으나,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중장기 계획이나 기업 · 인력 · R&D · 산업집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독립적인 법적 기반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2019년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2021년 'K-뷰티 혁신 종합전략' 등을 제시하고, 맞춤형 화장품 제도 도입, 천연 · 유기농화장품 제도 정비, 생산 · 수입실적 및 원료 관리 강화 등 「화장품법」을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국회는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화장품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법제화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는 화장품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및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화장품산업은 2025년 기준으로 수출액 114억 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 구체적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국내 화장품산업은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의 약 70% 이상을 담당하는 구조로, 산업 다양성과 창의성의 원천이 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 개별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해외 제품 인증, 마케팅, 유통 부담이 커서 산업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이에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자 이외에도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지원 · 육성을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제도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사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및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화장품 클러스터 지정 등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 발전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2026-08-20 (원안가결)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2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 · 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화장품의 안전 · 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신설).	2026-08-20 (수정가결)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복지부)

□ **과제목표**

○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 500억불 달성

○ mRNA 백신 국내기술 개발 및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율 제고*

* '30년까지 백신 2종 개발을 통해 국산화율을 ('25년) 27.3% → ('30년) 36.4%로 제고

□ **주요내용**

○ (보건의료 R&D 강화) 고령화·필수의료 위기 등 난제 해결* 및 바이오헬스 유망 분야 성과 창출을 위한 R&D 확대

*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 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혁신

– 의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부부터 박사 취득, 연구까지 의사과학자 체계적 지원, 신기술·현장 수요 기반 바이오헬스 핵심 융복합 인재 양성

○ (의료AI 혁신성장 지원) 한국 의료환경에 맞는 의료AI 기술 개발부터 의료현장 활용까지 전주기 투자 확대

– 의료데이터 상호연계·공동활용 기반 마련 및 디지털 기반의 병원을 활용한 연구플랫폼·테스트베드 구축

○ (혁신적 제약·바이오 육성) 신약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약가보상 개선, 과감한 규제혁신 및 인프라* 강화

* 도심집적형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클러스터 간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버추얼플랫폼 구축

–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수출 증대 및 K-의료·뷰티(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

○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기업 지원 확대, 국산 원료 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

2026 정부 업무보고(보건복지부, 2025. 1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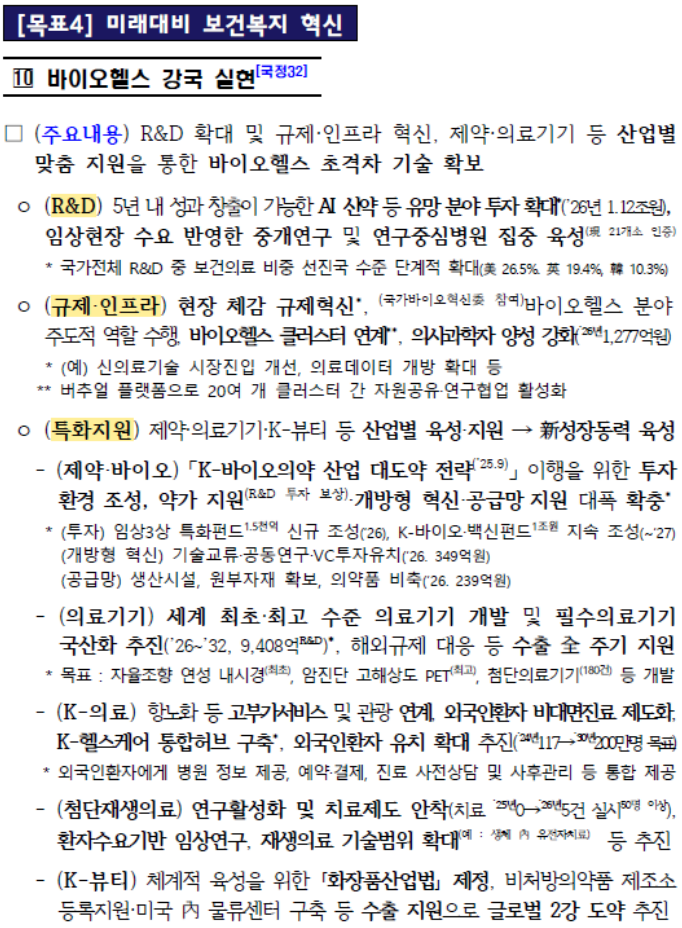

[목표4]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10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국정32]

□ (주요내용) R&D 확대 및 규제·인프라 혁신, 제약·의료기기 등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한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 (R&D)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AI 신약 등 유망 분야 투자 확대**('26년 1.12조원), **임상현장 수요 반영한 중개연구 및 연구중심병원 집중 육성**(목표 21개소 인증)

* 국가전체 R&D 중 보건의료 비중 선진국 수준 단계적 확대(美 26.5%, 英 19.4%, 韓 10.3%)

○ (규제·인프라) **현장 체감 규제혁신***, (국가바이오혁신委 참여)바이오헬스 분야 주도적 역할 수행,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연계****, **의사과학자 양성 강화**('26년 1,277억원)

* (예)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개선, 의료데이터 개방 확대 등

** 버추얼 플랫폼으로 20여 개 클러스터 간 자원공유·연구협업 활성화

○ (특화지원) 제약·의료기기·K-뷰티 등 **산업별 육성·지원 → 新성장동력 육성**

- (제약·바이오) 「K-바이오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25.9)」 이행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 약가 지원**(R&D 투자 보상), **개방형 혁신·공급망 지원** 대폭 **확충***

* (투자) 임상3상 특화펀드 1.5천억 신규 조성('26), K-바이오·백신펀드 1조원 지속 조성(~'27)
(개방형 혁신) 기술교류·공동연구·VC투자유치('26. 349억원)
(공급망) 생산시설, 원부자재 확보, 의약품 비축('26. 239억원)

- (의료기기) **세계 최초·최고 수준 의료기기 개발** 및 **필수의료기기 국산화 추진**('26~'32, 9,408억(R&D))*, 해외규제 대응 등 **수출 全 주기 지원**

* 목표 : 자율조향 연성 내시경(최초), 암진단 고해상도 PET(최고), 첨단의료기기(180건) 등 개발

- (K-의료) 행노화 등 **고부가서비스** 및 관광 **연계**,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K-헬스케어 통합허브 구축***,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추진('24년 117→'30년 200만명 목표)

* 외국인환자에게 병원 정보 제공, 예약·결제, 진료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 등 통합 제공

- (첨단재생의료) **연구활성화 및 치료제도 안착**(치료 '25년 0→'26년 5건 실시(80명 이상)), **환자수요기반 임상연구, 재생의료 기술범위 확대**(예 : 생체 內 유전자치료) 등 추진

- (K-뷰티) 체계적 육성을 위한 「**화장품산업법**」 **제정**, 비처방의약품 제조소 등록지원·미국 內 물류센터 구축 등 **수출 지원**으로 **글로벌 2강 도약** 추진

출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업무보고 누리집

참고 자료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 3.
이수진 의원안: 제정안의 법체계 및 주요 내용 등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 3.
서영석 의원안: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및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신설 등

글로벌 화장품 트랜드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 제22대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국회의원 정책자료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확대 방안 -K-뷰티를 중심으로 - 국회사무처 정책자료

'화장품산업육성법' 국회 통과…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4년 화장품 생산 · 수출액, 모두 사상 최대실적 기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화장품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진단과 규제개선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3-21-8 2023. 7. 31.
□ 화장품 산업의 이해와 국내외 산업 동향
□ 국내 화장품 산업의 시기별 특징 및 경쟁력 진단
□ 화장품 산업 글로벌 정책 및 규제 체계 분석
□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규제개선 방안

다.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도입

개요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사업자가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시장에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의무량을 충족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보다 현물시장에서 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충족하는 비중이 커지고, 소규모 태양광 중심으로 설비가 편중되면서 정부가 태양광 · 풍력 등 에너지원별 보급 규모와 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 가격 변동과 장래 수익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전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시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태양광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을 2017년부터 시행했고, 이후 풍력에도 경쟁입찰을 도입하는 등 점차 경쟁입찰 · 장기계약 방식을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국회는 이러한 정책적 실험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약 15년 만에 RPS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관련하여 입법정책브리핑 제2026-3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정비 이슈 참조).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는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고정가격 방식의 계약시장제도로 일원화하고, 현행 발전량 단위 공급의무화 제도를 설비용량 단위의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로 개편 등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 ·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 ·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	2026-08-20 (원안가결)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여해 왔음. 그러나 최근 신 · 재생에너지 보급환경 변화에 따라 공급인증서(REC)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발전사업자들의 자체 투자보다는 외부 구매 의존이 증가하는 한편, RE100 참여 기업과 수요 경합, 수급 불균형 등이 발생하면서 현물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등 동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사업자 · 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며, 보급목표량 또는 보급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보급대체이행금 납부를 통해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신 · 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회수 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하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민간투자 유인과 보급 속도를 제약할 수 있음. 이에 국유재산을 신 ·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신 · 재생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026-08-20 (원안가결)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산업부)

□ **과제목표**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 **햇빛·바람연금 확대, RE100산단** 구축 등 **지역 균형성장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재생e 확대**) **재생e 목표**('30. 78GW)를 상향하는 **로드맵 수립·이행**

- **계획입지 발굴, 집적화단지 신속 조성,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을 통한 **서남해·제주 해상풍력 단지** 구축
- 산단·영농형·수상·주차장·지자체 소유 공공부지 등 **태양광 입지 다각화**
- **조력·수열** 등으로 재생에너지 다각화, **'40년 석탄발전 폐지** 추진

○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계약시장**으로 **단계적 개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의 **이격거리 완화·폐지** 추진 등 규제 혁신

* 정부주도 계획입지 도입, 전파영향평가 기준 완화, 풍황계측기 설치허가 개선 등

○ (**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상용화, **해상풍력 터빈·부품·기자재 기술개발, 설치선 건조** 및 **전용항만** 설치

○ (**지역 상생**) **햇빛·바람연금 확대,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등으로 지역소득 증대

-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재생에너지 모집·인허가·설치·유지보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육성·활용을 통해 주민 수용성 제고

○ (**RE100산단**)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산지소**'형 RE100산단 조성

-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 기업유치를 위한 **분산형 모델**(재생e 직접 거래) 및 **재생e 요금** 강구
- 기업투자와 인재유치를 위한 **정주·교육 여건조성** 및 신도시 기반 마련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

2026년 경제성장전략(관계부처 합동, 2026. 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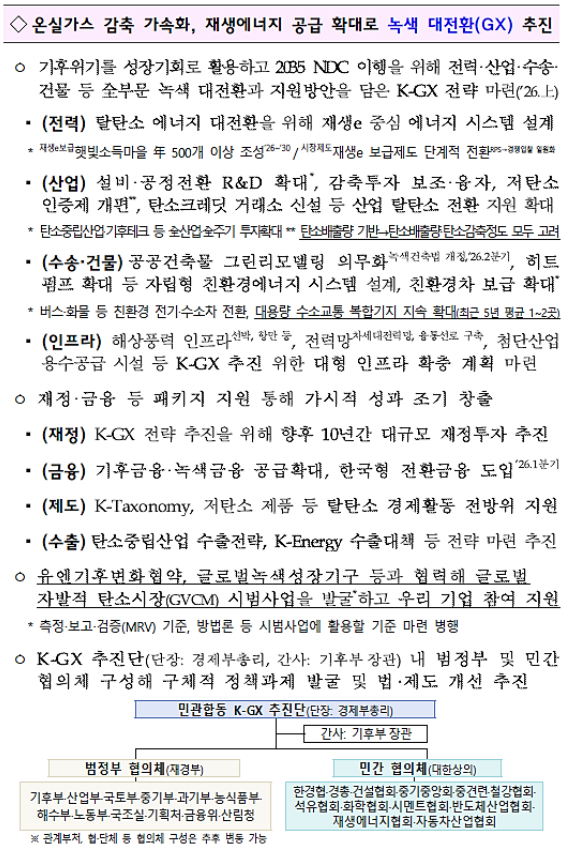

◇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녹색 대전환(GX) 추진

○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활용하고 2035 NDC 이행을 위해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全부문 녹색 대전환과 지원방안을 담은 K-GX 전략 마련('26.上)

- **(전력)**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재생e 중심 에너지 시스템 설계
  * 재생e보급핫빛소득마을 年 500개 이상 조성('26~'30) / 시장제도재생e 보급제도 단계적 전환(RPS→경쟁입찰 일원화
- **(산업)** 설비·공정전환 R&D 확대*, 감축투자 보조·융자, 저탄소 인증제 개편**, 탄소크레딧 거래소 신설 등 산업 탈탄소 전환 지원 확대
  * 탄소중립산업기후테크 등 全산업全주기 투자확대 ** 탄소배출량 기반→탄소배출량탄소감축정도 모두 고려
- **(수송·건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녹색건축법 개정,'26.2분기), 히트펌프 확대 등 자립형 친환경에너지 시스템 설계, 친환경차 보급 확대*
  * 버스·화물 등 친환경 전기·수소차 전환, 대용량 수소교통 복합기지 지속 확대(최근 5년 평균 1~2곳)
- **(인프라)** 해상풍력 인프라(신박, 항만 등, 전력망(차세대전력망, 송전선로 구축, 첨단산업 용수공급 시설 등 K-GX 추진 위한 대형 인프라 확충 계획 마련

○ 재정·금융 등 패키지 지원 통해 가시적 성과 조기 창출

- **(재정)** K-GX 전략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대규모 재정투자 추진
- **(금융)** 기후금융·녹색금융 공급확대,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26.1분기)
- **(제도)** K-Taxonomy, 저탄소 제품 등 탈탄소 경제활동 전방위 지원
- **(수출)** 탄소중립산업 수출전략, K-Energy 수출대책 등 전략 마련 추진

○ 유엔기후변화협약,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과 협력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 참여 지원
  * 측정·보고·검증(MRV) 기준, 방법론 등 시범사업에 활용할 기준 마련 병행

○ K-GX 추진단(단장: 경제부총리, 간사: 기후부 장관) 내 범정부 및 민간 협의체 구성해 구체적 정책과제 발굴 및 법·제도 개선 추진

출처: 2026년 경제성장전략(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

2026 정부 업무보고(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1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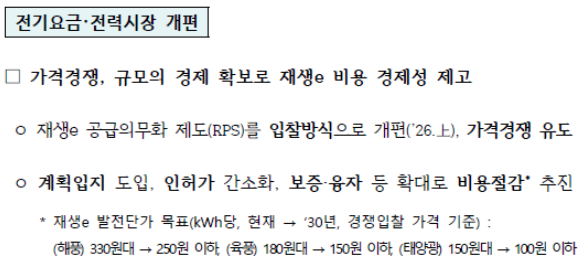

전기요금·전력시장 개편

□ 가격경쟁, 규모의 경제 확보로 재생e 비용 경제성 제고

○ 재생e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입찰방식**으로 개편('26.上), **가격경쟁 유도**

○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간소화, **보증·융자** 등 확대로 **비용절감*** 추진

* 재생e 발전단가 목표(kWh당, 현재 → '30년, 경쟁입찰 가격 기준) :
(해풍) 330원대 → 250원 이하, (육풍) 180원대 → 150원 이하, (태양광) 150원대 → 100원 이하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업무보고 누리집

참고 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의원안: RPS 제도를 계약시장제도로 전환 등 2026. 3.
강승규 의원안: 현행 RPS제도의 재생에너지 설비 입찰제도 전환 2025. 9.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 방안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기틀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 국회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재생에너지 보급제도가 15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18. 11. 14.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일정 발전설비 규모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일정 비율만큼 구체적인 수치의 신 ·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발전량을 할당하여 비용 효율적으로 신 ·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된 제도다. 2018년 기준 공급의무자는 한국전력공사(KEPCO)의 발전자회사 6개사 등 21개사이며, 공급의무자는 신 ·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스스로 건설하여 전력을 자체 생산하거나 기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할당받은 공급의무량을 충당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과 발전설비 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목표 대비 의무 이행 비율 역시 90%를 상회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제도의 구조적 특징으로 신 · 재생에너지 공급 비용 절감 효과가 불확실한 면이 있다. 둘째,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용이한 '폐기물 및 바이오 매스 혼소 발전' 등의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성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발전 공기업 등 공급의무자에게 할당되는 공급 의무량이 단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종 전력소비자들인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RPS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신 · 재생에너지 공급 비용의 효과적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화된 신 · 재생에너지 경매 시장을 도입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급 기준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 다소비 기업 및 탄소 다량 배출 산업분야의 기업 등 민간 에너지 소비 주체들이 직접 신 ·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개요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탄소배출을 감축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이를 40%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2031~2049년의 구체적인 정량적 감축경로는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2031~2049년 감축목표에 아무런 정량적 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이전할 수 있고 국가의 일관된 감축정책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2025년 11월 파리협정에 따른 차기 NDC 제출에 대응해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국회는 이러한 2035 NDC를 법률에 반영하는 데서 더 나아가 2040년과 2045년까지 5년 단위 감축경로를 법정화하였습니다. 이제 2035년뿐 아니라 2040·2045년의 감축경로까지 제시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10~20년 후의 탄소비용과 탈탄소 투자 방향을 보다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관련하여 입법정책브리핑 제2025-9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제도화, 제2025-10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제도화 II 이슈 등 참조).

2026년 8월 26일 본회의에서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 상한 · 하한 범위 형태로 반영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음. 아울러 감축목표 설정 시 객관적 ·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편,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및 민간 · 정책금융의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원칙을 명시하면서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계의 원활한 중장기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명시함. 아울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녹색산업 육성 ·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환경교육 지원 및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며,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범위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 및 탄소예산에 관한 분석을 추가하려는 것임.	2026-08-26 (원안가결)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환경부, 국조실)

□ **과제목표**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 달성('18년 대비 40% 감축)을 위한 이행기반 조성

○ 2035년 감축목표 수립 및 2050년까지 **장기 감축 로드맵** 마련

○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탄소중립산업 및 기후 신산업 육성

□ **주요내용**

○ (**2030 감축목표 달성**) 산업·건물·수송·전환 분야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 수립, 기업의 실질적 탈탄소 전환을 위한 향후 5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 (**2035 이후 로드맵 수립**)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 수립('25.下), 미래세대를 고려한 탄소중립 **장기 감축 로드맵** 마련

○ (**이행기반 강화**)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확충, 예비타당성 효과 분석 시 탄소저감효과 반영, 대중교통 건설사업 등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 기후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신속한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 녹색 공공조달 확대, 지역 소재 **기후테크** 기업을 우대하는 특화 펀드 조성,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교체 시 전환지원금 지원, 전기차 충전소 확대

○ (**국민참여 확대**) 기후 **공론장** 마련(기후시민회의), 탄소중립 국민 실천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정부-시민사회 협력 탄소중립 실천단 운영

○ (**국제사회 논의 주도**) 감축·적응·그린ODA 분야 국제논의 주도 및 지원 확대, 한·중·일 기후위기 대응 공조 강화, 남북 기후·환경협력 과제 발굴·추진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관계부처 합동, 2025. 8. 22.)

2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금융 확대

【 온실가스 감축 】

○ **(감축 로드맵)** 기존 2030 NDC보다 강화된 **2035 NDC 수립·제출** 및 미래세대 등을 고려한 **장기**('31~'49년) **감축 로드맵 수립**

○ **(배출권거래제) 4기**('26~'30년) **배출권 할당시 엄격한 총량 설정** 및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적용 기업**의 **감축유인 제고**

○ **(탄소크레딧)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해 **탄소감축 인센티브 확대**(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 방향 발표, 25.下)

-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블록체인) **신설, 중소기업 자발적 탄소감축 체계 연계** 등 **크레딧 시장 기반 조성**
- **크레딧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 가이드라인 마련**

○ **(국제탄소시장 참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과 신뢰성있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표준**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국제탄소시장 진출 지원**

○ **(해외 탄소규제 대응) 탄소국경세**(CBAM) 등 **대응** 위한 **지원** 및 **기반구축**

-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서비스**로 **밀착지원**하고, **공급망** 內 **기업**들과 **탄소배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플랫폼 구축**('28년)

○ **(정의로운 전환)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업재편 컨설팅, 근로자 재교육**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및 **고용안정 지원** 등 지속 추진

출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025 정부 업무보고(환경부, 2025. 1. 10.)

핵심과제 ❷ :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감축목표	■ (NDC) 2030 NDC('21) 이행관리	■ (新)2035 NDC 마련 및 UN 제출(연내) ■ (新)'50년까지 복수의 감축경로(안) 마련(~'25.下), 법제화(~'26.2)
탄소시장	■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중심,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및 시장조성자 등만 시장 참여	■ (強)△유상할당 대폭상향(발전), (新)△기관투자자도 시장 참여('25.2~), (新)△민간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25.上)
녹색투자	■ (녹색금융) 중소기업 약 1.5조원 투자 견인 ■ (녹색조달) 녹색인증 제품 공공조달(조달청), 의무구매(환경부)	■ (強)약 3.5조원까지 확대(채권, 유동화증권 고려 시 더 확대) ■ (新)중소·중견기업 녹색전환보증 도입(1,400억원) ■ (強)환경부-조달청 협업을 통해 녹색기술·제품 조달가점 및 대상제품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25.上)
전기차	■ 성능에 따라 전기차 구매보조금 차등적용 ■ (충전기반) 이동거점 → 급속, 생활거점 → 완속충전기 중심 충전기반 확충	■ (新)다자녀가구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생애 첫구매 청년 기본 국비보조금의 20% 추가지원 등 ■ (強)생활공간 급속 확충, 스마트제어 도입 및 이동형 충전서비스 확대
플라스틱	■ (컵보증금제) 세종·제주 선도 시행 ■ (재생원료) 사용목표 3%	■ (強)선도지역 지속추진 + 놀이공원·카페거리·프렌차이즈 등 자율시행 확대 ■ 10%('30년까지 30% 목표)

출처: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환경부 보도자료

참고 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정혜경 의원안 등: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2026. 7.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본 법 · 제도적 과제 :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입법과제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2035 NDC와 장기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현안과 과제 : 국회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및 배출권거래법 개정방안 국회사무처 정책자료

파리협정 준수와 국민기본권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회사무처 정책자료

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 사건 결정

대한민국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탄소감축경로 입법논의를 위한 국회 기후공론화 필요성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6. 2. 3.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2031년~2049년 탄소감축경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2025년 11월,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했다. 국회는 판결문의 내용과 정부의 계획을 참조하여 입법 절차를 진행하되, 매우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가 해외의 기후공론화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숙의 공론화를 추진해, 이해관계가 복잡한 탄소감축경로 입법 논의에서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